

지자체 노동자 안전을 위한 우선 과제 토론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지자체 책임을 묻는다!

4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소 :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토론회 생중계-민주노총 채널

발 제

민주노총 2022년 지자체 선거 생명안전 요구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경기도 노동안전보건정책 추진 사례 검토

- 유성규 노무사

토 론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산업연맹 지방선거 요구

-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 박준도 서울남부노동자의미래사업단 정책기획팀장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원 방안 요구

-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준) 위원장

할 말 많고, 할 일 많은 지자체 노동안전 문제

- 주훈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기획실장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프 로 그 램
10:00~ 10:10	■인사 및 참석자 소개 -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10:10~ 10:30	■발제. 2022년 지자체 선거 민주노총의 생명안전 요구 불평등 차별 없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10:30~ 10:50	■보조발제. 경기도 노동안전보건정책 추진 사례 검토 - 유성규 공인노무사
11:00~ 11:40	■토론 1.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산업연맹 지방선거 요구 -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토론 2.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작은사업장 공동휴게실을 중심으로 - 박준도 서울남부노동자의미래사업단 정책기획팀장
	■토론 3.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원 방안 요구 -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준) 위원장
	■토론 4. 할 말 많고, 할 일 많은 지자체 노동안전 문제 - 주훈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기획실장
11:40~ 12: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자료집 차례

- 발제. 2022년 지자체 선거 민주노총의 생명안전 요구 04
불평등 차별 없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보조발제. 경기도 노동안전보건정책 추진 사례 검토 26
유성규 공인노무사

- 토론 1.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산업연맹 지방선거 요구 31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 토론 2.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44
작은사업장 공동휴게실을 중심으로
박준도 서울남부노동자의미래사업단 정책기획팀장

- 토론 3.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원 방안 요구 48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준) 위원장

- 토론 4. 할 말 많고, 할 일 많은 지자체 노동안전 문제 52
주훈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기획실장

불평등 차별 없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1. 들어가며

지방정부의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는 지속되어 왔으나, 사실상 외면 받아 왔다. 기간에는 생명안전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은 <재난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가 있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태풍, 홍수, 화재 등 <자연 재난>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고 <긴급구호, 피해 지원> 등 그 역할이 제한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감정노동, 산재 예방등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있으나, 조례 제정 숫자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정된 조례에 기초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한 지방정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지역 내에 산업단지가 있거나 지역의 대형참사가 발생해도 지방정부는 사고 당시의 반짝 정치 행보로 면피해 왔다.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광주의 학동, 화정동 참사와 같이 지역의 노동자 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분노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책무가 부여되었다. 셋째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로서 의무와 처벌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지자체 별로 관련 교육이나 체계 정비를 하기도 하고, 지역의 주요 거점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한 현수막이 걸리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사용자, 사업주이기도 하고, 지역 내 사업장이나 시설 등의 인허가나 관리 운영의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지자체 선거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경영책임자인 <장>을 선출하는 것이기에, 2022년 지자체 선거에서 생명안전 의제는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지자체 선거가 각종 이권과 개발 공약만 난무하는 선거, 정치 공방으로만 점철되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논의를 통해 요구를 정립하고, 적극적인 대응 사업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

2. 지방정부 노동안전보건 정책과 사업 현황

1) 지자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서의 의무

중양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2022, 3 노동부 발행/인용 발체)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 공공행정 또는 각급 학교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교육등 일부 적용제외. 현업직종은 전면 적용
- 모든 기관에 공통 적용 산안법 주요 규정 : 산업재해 발생보고, 법령요지 게시, 안전조치, 보건조치,도급인(원청)의 무, 건강진단,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의무

○ 공공행정 중 현업업무 - 안전교육, 산보위 구성 운영, 원청책임 등 적용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지자체 직접 고용 원하청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 부여 (2022년 8월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벌칙 - ①항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과태료 1,500만원

②항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1,0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대책 수립, 시행 책무 부여 (2021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로 지자체의 의무 : 폐기물 관리법

<p>시행규칙</p> <p>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 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p> <p>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p> <p>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p> <p>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p> <p>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p> <p>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p> <p>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p> <p>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p> <p>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관리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련 의무와 권리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p> <p>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p> <p>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p> <p>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p> <p>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p> <p>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관리권자</p> <p>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p> <p>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이하생략-</p> <p>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p> <p>시행령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p>

2.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재난안전관리법 -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계획 등

재난안전관리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 이하 생략-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의무

법 4조 1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200위 건설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것 (3명 이상인 경우)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위험성 평가실시하여 보고받은 경우는 점검으로 본다
	4.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 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 노동부 장관 고시사항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줄 것 -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6. 법정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겸직일 경우 업무수행시간 보장
	7.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 마련.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 이행하는 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할 것. 산보위 건설안전 협의체 등은 의견 들은 것으로 보고, 개선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8. 매뉴얼 마련하고 매뉴얼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9.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과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 용역, 위탁업체의 재해 예방 능력 평가기준절차 -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 건설업의 공사 기간 조선업의 선박 건조 기간
2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항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 법령 준수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민간위탁 포함.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끝난 후 지체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2. 법령 이행이 되지 않는 사실 확인되는 경우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2-3.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4 미 실시 교육 지체 없이 이행지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 중대 시민재해 경영책임자 의무 -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

시행령 10조
- 안전관리 인력, 예산 확보 이행, 점검 관련 실시
- 도급, 용역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중대시민재해 예방위한 필요한 비용 기준 마련. 연 1회 이상 점검

○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자체의 민간 건설현장 점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③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관련 권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 :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발생하는 누출, 화재, 폭발사고. 인근 지역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 국토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시킨 사업자, 불법 도급 하도급, 직접 시공 위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 등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할 수 있음, 지자체에 영업정지 권한 위임

제 83조 건설업의 등록 말소

-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를 할 수 있음. 지자체에 등록 말소 권한 위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6. 25., 2020. 1. 7.>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휴게실등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 2(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1. 8. 17.>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광역 지자체별 노동안전 조례 제정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조례는 감정노동 보호, 화학물질 알 권리 조례,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등이 가장 많이 제정되어 있음. 노동 혹은 비정규 노동에 대한 조례에 일부 내용이 포괄되어 있기도 함.
-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 조례는 99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조례는 77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명예감독관 (시민 명감 포함) 운영 조례는 74개 제정되어 있음.
- 노동자 안전보건 관련 포괄적 조례 제정도 확대되어 왔음

<표 1> 광역 지자체별 노동 안전 조례 제정 현황/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조례 명칭	제정일	시행일
1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19. 11. 7	2019. 11. 7
2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 1. 13	2020. 1. 13
3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 5. 21	2020. 5. 21
4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2020. 5. 27	2020. 5. 27
5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 9. 28	2020. 9. 28
6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 10. 5	2020. 10. 5
7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 12. 29	2020. 12. 29
8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1. 2. 19	2021. 2. 19
9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2021. 4. 9	2021. 4. 9
10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1. 7. 2	2021. 7. 2
11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1. 8. 6	2021. 11. 19
12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8. 9	2021. 11. 19
13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1. 9. 30	2021. 9. 30
14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2021. 10. 1	2021. 10. 1
15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1. 12. 30	2021. 12. 30

3) 노동안전 조례의 주요 내용 비교 및 평가 -발췌 인용-

<표 2> 광역 지자체 노동 안전 조례 비교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범주		해당 광역 지자체(제정일 기준 나열)	비고
적용 대상 (지원 대상)	모든 사업장	부산, 광주, 충북, 제주, 경북	- 부산, 광주, 충북은 모든 사업에도 적용
	지자체 산하 사업장	서울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
	지정 사업장	경남, 경기, 전남, 충남, 울산, 전북, 인천, 강원	- 50명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이주노동자, 건설현장, 공공 외주 위험작업장 등
	대상 미지정	대전	- 15개 광역 지자체 조례 가운데 유일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안전/안전보건지킴이,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경기(의), 부산, 광주(의), 충남, 인천(의), 충북, 제주, 서울(의), 경북	- (의): 운영 의무화 - 광주는 '안전보건조사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다른 지자체의 노동안전 조사관과는 업무 내용이 다름
사업주의 협력(협조)		경기, 부산, 광주, 충남, 울산, 인천, 충북, 제주, 서울, 경북	- 광주의 경우, 안전보건조사관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을 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출입한다고 명시 -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도입한 지자체들은 모두 사업주 협력을 명문화함
노동안전조사관		울산, 충북, 서울	- (의): 운영 의무화 - 울산은 활동 대상을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한정
안전보건 자문/예방위원회 (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경남(노), 경기(대), 전남(대), 광주(의, 노), 충남, 울산(노), 인천, 충북(의, 노), 제주(의, 노), 서울(의, 노), 대전(대), 경북(노)	- (의): 운영 의무화 - (노): 노동조합의 참여 혹은 추천 - (대): 기존 노사민정협의체로 대체
노동안전보건 계획 수립		경남, 경기, 부산(의), 광주(의), 울산(의), 전북, 인천(의), 강원, 충북(의), 서울(의), 대전(의), 경북(의)	- (의): 운영 의무화 - 주요 공통 사업 계획: 산재 현황 분석 및 대책 마련, 정책 개발, 안전보건 교육, 홍보, 법률 지원 및 상담 등
노동안전보건센터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경기, 전남, 부산, 광주, 충남, 인천	- (의): 운영 의무화
우수기업 인증/ 포상		경남, 경기, 전남, 광주, 충남, 울산, 전북, 인천, 강원, 제주, 대전	- (의): 운영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		울산(의), 인천(의)	- (의): 운영 의무화
개인보호장구 구입 및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경남, 제주, 경북	- (의): 운영 의무화
안전보건컨설팅		경남	- (의): 운영 의무화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재 피해 노동자 치료 지원		경남, 울산(의), 경북	- (의): 운영 의무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노동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계획		인천(의), 충북(의), 서울(의)	- (의): 운영 의무화 - 적용 대상 사업장 내
유해작업 도급 금지		부산(의), 인천(의)	- (의): 운영 의무화 - 시 및 공공기관의 유해한 작업 도급 금지 방안
중대재해 발생 기업 제재		광주(의)	- (의): 운영 의무화 - 지자체 사업 계약 2년 제한

- 조례 명칭부터 세부 구성과 조문의 총량 모두 제각각인 광역 지자체들의 조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총 15가지의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각 범주별 비교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① 적용 대상(지원 대상): 거의 대부분의 조례는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대신 지원 대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도 있다. 적용 대상별로 다시 세분화하면 ▲ 모든 사업장 및 사업 ▲ 지자체 산하 기관 및 사업장 ▲ 지정 사업장 ▲ 대상 미지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 곳은 부산을 포함해 총 5곳이었다. 지자체 산하 행정기관 및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곳은 서울뿐이었다. 조례상에서 지정한 사업장만에 적용하는 지자체는 경남, 경기 등 8곳으로 이들 지자체는 노동자 50명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이주노동자, 건설현장, 공공부문 외주 위험작업장 등으로 세세히 명시하여 지정하였다. 대전은 유일하게 적용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대상 미지정)였다.

②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경기도가 맨 처음 신설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조례 적용 대상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 노동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 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명칭은 (지역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지킴이, 안전보건지킴이 등으로 다양하다. 경기도를 비롯해 모두 9곳의 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경기, 광주, 인천, 서울만이 운영을 의무화하였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다. 인천, 서울은 ‘지킴이’ 아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칭을 쓰고 있다. 광주의 경우 유일하게 ‘안전보건조사관’ 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아래에 다루는 타 지자체의 노동안전조사관 제도와 달리 여기서의 노동안전지킴이와 제도 내용상 유사하다. 광주는 안전보건조사관이 구성하는 조직을 ‘노동안전지킴이단’ 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사업주의 협력(혹은 협조): 산안법 상 사업주의 협력 혹은 협조를 명시한 지자체는 서울, 경기, 울산 등 총 10곳이었다.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한 9곳 지자체는 모두 사업주 협력 조항을 넣었으며, 울산만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과 달리 노동안전지킴이는 법적으로 사업장 출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협력 혹은 협조가 있어야만 사업장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연유에서 9개 지자체 조례에 사업주 협력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 조례의 경우, 안전보건조사관이 사업주의 승인이 있을 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출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조 3항).

④ 노동안전조사관 제도: 울산시에서 먼저 도입한 노동안전조사관이란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노동 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행되는지 지도·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울산, 충북, 서울이 도입하였는데, 제도 운영을 의무화한 곳은 없었다. 울산의 경우 공공부문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⑤ 안전보건 자문/예방위원회(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설치: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자체의 노동 안전 정책을 심의 혹은 자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는 노사정 안전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총 12곳의 지자체가 관련 내용을 조례에 담았는데, 광주, 충북, 제주, 서울만이 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 혹은 노동조합 추천을 명시한 곳은 경남, 광주, 울산, 충북, 서울, 경북 등이었다. 경기, 전남, 대전은 기존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노사민정협의회로 관련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⑥ 노동안전보건 계획 수립: 노동안전보건 계획은 대개 산재 현황 분석(지역 및 업종별) 및 대책 마련, 정책 개발, 안전보건 교육, 홍보, 법률 지원 및 상담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경남, 경기 등 총 12곳의 지자체가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였으며, 그 가운데 부산, 광주, 울산, 인천, 서울, 대전, 경북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⑦ 노동안전보건센터(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설치: 지자체의 노동 안전 정책을 실행하는 조직으로서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지자체는 경기, 전남, 부산, 광주, 충남, 인천 등 총 6곳이었다. 부산과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의 운영도 이 센터 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운영을 의무화한 곳은 없었다.

⑧ 우수기업 인증/ 포상 제도: 지자체 관내에서 노동 안전 보건 우수기업을 선정 및 인증하고 포상(인센티브)을 주는 제도를 말하며, 경남, 전남, 제주, 대전 등 총 11곳의 지자체가 이를 제도화하였다. 포상에는 지방세 감면과 같은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11개 지자체 모두 해당 사업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두었다.

⑨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 제도: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관내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 공단이 많이 입주해 있는 울산과 인천이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였다.

⑩ 개인보호장구 구입 및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인보호장구 구입을 지원하고, 사업장의 위험 작업환경 및 설비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경남, 제주, 경북 등 3곳이 조례에 반영하였는데, 의무 수행 사업은 아니다.

⑪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경남은 유일하게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을 도입하였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⑫ 산재 피해 노동자 치료 지원 제도: 경남, 울산, 경북 등 3개 지자체가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체 지원은 아니며,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곳 가운데 울산만이 사업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⑬ 노동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계획: 이 계획은 조례 적용 대상 사업장의 노동 안전 관리체계에 서 노동자 참여 확대 방안의 수립과 관련된다. 인천, 충북, 서울이 해당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모두 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⑭ 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도: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해한 작업의 도급은 금지하는 계획의 수립 및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지자체는 부산과 인천 2곳 뿐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유해 작업 도급 금지를 의무화 하였다.

⑮ 중대재해 발생 기업 제재 제도: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2년간 지자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광역시 조례가 이를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지자체의 권한을 잘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 지방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현황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국가적 산업안전보건정책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연구 >에 2020년 기준 정리된 현황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후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조직 및 관련 업무내용
*검색어: 산업안전, 안전보건(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직도 기준, 2020.06기준)

순번	구분	부서명	인원수	담당업무
1	강원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 공공노무팀	1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경기	노동국 노동권익과	3 (전담팀)	•산업재해 예방 및 상담, 보상지원 •노동상담 및 구제지원

		산업재해예방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지원
3	경남	일자리경제국 노동정책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시책 추진 • 산업안전보건위, 산업재해예방위 구성 및 운영
4	경북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노동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문화 확산 지원
		자치행정국 회계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5	광주	자치행정국 총무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 공무원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관리
		노동협력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예방협업, 노동인권교육

순번	구분	부서명	인원수	담당업무
6	대구	총무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운영, 안전보건교육 등
7	대전	운영지원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8	부산	행정자치국 총무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설비분야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
9	서울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안전팀	4 (전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안전보건 추진계획 수립 • 노동안전보건 대외기관 민관협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관리체제 관리 운영 • 노동현장 유해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 노동현장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기준 확보 지원조례 등 규정 관리 •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위원회 운영
		행정국 총무과 시설관리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10	세종	운영지원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11	울산	총무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관리
		일자리노동과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사회재난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인적사고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지원 • 산재예방 감축(국민생명지키기 산업안전 분야)

12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점검 관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및 점검 관련
		총무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관리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13	전남	중소벤처기업과 노동정책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정책 전반
14	전북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산업안전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내 제조업체 산업안전관리 합동점검, • 한빛원전 및 산업안전 관련 협업기관 소통
		자치행정국 총무과 공무원노사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관리

순번	구분	부서명	인원수	담당업무
15	제주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	3 (전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 수행 사업 • 근로자 보건교육 계획 수립 •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에 관한 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통계)자료 관리 • 사업장 보건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 보건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계획 수립 추진 • 관리감독자 교육 계획 수립 추진 • 위험성 평가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지도
16	충남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관리 업무
17	충북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산업재해 예방 등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지자체 조치 언론보도

-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인력 외부인력 29명 영입.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관리자 15명,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사등 보건관리자 13명, 변호사 1명. 4급이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의무화
- 광주시와 전남도는 1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 형태의 전담 조직 구성, 광주시는 안전정책관실·노동협력관실·총무과 등 3개 과 관련 인력 4명으로 '중대재해TF팀'을 구성했으며, TF팀장은 안전정책관(4급)이 맡는다. 전남도도 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5명 규모로 '중대재해지원TF팀'을 꾸려 관련 업무에 착수. 반면 기초지자체는 전담 조직·인력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부서를 상시 기구로 둔 자치구는 서구가 유일. 'HDC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피해복구 지원 업무를 도맡는 한시 기구 산하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지난 18일부터 운영
- 인천시는 28일 사군구, 공사공단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정책회의' 개최
박남춘 인천시장 및 실·국장을 비롯해 군·구 부단체장, 공사공단 이사장,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시 시민안전감독관 등 분야별 전문가 등 총 40여명이 참석

3. 2022년 지자체 선거 민주노총 생명안전 요구

생명안전에 불평등 차별이 없는 지역

1.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수
2.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 차별 없는 일터
3. 안전한 산업단지, 중소 사업장 대책. 노후산단 안전 대책 수립
4. 중대재해 예방, 조사, 안전관리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

1)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수

(1) 실태

- 지자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임. 소속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의 사고성 재해, 감정노동 등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의무가 있음. 폐기물 관리나 청소 등 위탁 도급의 경우 원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발주자의무를 이행해야 함.
- 2018년 민주일반연맹이 243개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결과 111개 지자체는 환경미화

원 노동자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 실시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170개 지자체
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 설치, 안전보건관리 규정 미 작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선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 관리법의 주간작업 전환, 3인
1조 작업등도 서울의 21.2% 이행등 이행이 미흡한 상황임.

-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최근 5년간 232명이 산재로 사망함. 민간 건설공사보다 공공건설공
사가 산재발생이 높은 실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발주자로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를
방기한 결과임.
-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산안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지
자체별로 제정되어 있는 감정노동 보호 조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법 준수나 지자체
조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
-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지자체는 소속노동자와 시민의 중대재해 예
방을 위해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
립하여 점검과 예방업무를 이행해야 함.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는 되지 않고 있음.

(2) 요구

①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청소, 환경미화원 노동자 위탁금지 및 직접 고용
- 청소, 환경미화원 노동자 주간작업, 3인1조 작업등 폐기물 관리법 준수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100리터 종량제 폐기
- 지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지자체 및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실질 사업 집행

② 지자체 공공기관 및 발주공사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 감독 및 산재은폐 추방

-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거부권 및 중지권 보장. 실질적 보장을 위해 위험작업 거부로 인한
원하청 사업주의 손실보장, 노동자의 작업거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발주 공사 착공. 허가 시공에 산재다발, 산재예방, 산재은폐 관련 항목 추가 및 실질화
- 지자체 발주공사 산재예방에 노동자, 시민 참여 강화
- 지자체 발주공사의 부실시공,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감독강화 위해 명예 감독관제 운영
- 지역 내 노동조합,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시단 운영

③ 지자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노동자 시민재해 예방위한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지자체 소속 노동자의 위험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2인1조 작업등 인력 기준 선정
-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심의에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경
영위원회 등

- 지자체 위탁 도급계약 시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및 적정한 사업기간 반영

2)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 차별 없는 일터

(1) 실태

- 양극화의 확대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도 불평등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음.
- 하청 노동자,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는 임금 및 노동시간 차별에 더해 생명과 안전에도 심각한 상황임.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에서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지자체 차원의 사업이 확대 실시 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0년 8월부터 휴게실 설치가 법정 의무화됨. 그러나, 하청 노동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 아파트형 공장등 소규모 임대 사업장, 배달, 대리운전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2020년 산안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산재예방 책무가 도입되고, 일부 지자체는 열악한 사업장의 휴게실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을 하고 있음.
- 지자체가 공용휴게실 설치 및 비용 지원으로 불평등 차별 없는 일터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함.
- 택배, 화물 노동자는 장시간 운행, 과중한 노동으로 과로사 다발하고 있으나, 다수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어 검진이나 의료지원의 불평등 차별을 받고 있음. 이는 다수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일반의 문제임.
- 일부 지자체에서 퀵 서비스, 건설기계,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의료센터를 개설하여 화물운동 노동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검진, 의료 서비스 지원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노동자 건강권의 불평등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함.

(2) 요구

① 공용 휴게실 설치

- 아파트형 공장등 소규모 밀집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용휴게실 설치
- 숙박업, 음식업 등이 밀집되어 있는 시장, 00거리 등에 공용휴게실 설치
- 검침, 집배, 택배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용휴게실 설치
-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 및 비용 지원
- 지자체 및 출연기관의 하청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

②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검진, 의료 지원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건강검진 실시 및 비용지원
- 고속도로 휴게실 등 거점지역에 의료센터 개설로 화물운송 등 운수분야 특고, 플랫폼 노동자 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

3) 안전한 산업단지 중소 사업장 대책. 노후산단 안전대책 수립

(1) 실태

- 산재사망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정부의 기간 정책은 1회성 예산설비 지원사업과 감독에만 집중되고 있음.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지속적인 산재예방 사업이 보장되어야 하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100인 이상이고, 그나마 1개월에 1회 방문하는 위탁 대행으로 진행되고 있음.
- 중소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 국가산단, 농공산단 등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소사업장에 대한 예산 및 설비 지원이 지속성을 가지고 재해예방에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소영세 사업장의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밀집사업장의 관리 주체인 관리 공단이나 시설관리 혹은 직능별 협회 등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공공성을 띤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로 구축되어야 함.
- 공단 사업장 노동자들은 휴게실도 없고, 각종 화학물질, 분진속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세탁실, 탈의실도 없는 상황이며 이는 가족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임.
- 여수, 울산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단지가 30년, 40년 이상 노후산단임. 그러나, 대기업들의 정비주기는 점차 완화되고 있어, 대규모 화약창고와 같은 위험과 시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 대규모 국가산단임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호는 취약한 상황임.

(2) 요구

- 산업단지 내에 응급 구조 시스템, 노동자 건강관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산업단지 내에 산재예방 노동자 감시체계 구축 : 지자체 명예 감독관 제도 운영
 - 중소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자, 공동보건관리자 선임 및 운영
 - 중소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치 운영
 - 공단의 거점 및 공용휴게실 설치
 - 공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 국가산단, 지방산단의 노후설비 안전 대책 수립

4) 중대재해 예방, 조사, 안전관리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1) 실태

- 산업재해가 다발한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 장관은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으나, 실질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음
-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장의 노동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단순 기술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땀

방식 대책이 반복되고 있음.

- 구의역 김군의 죽음과 같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비 문제는 노동자, 시민의 재해였으며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근본원인 조사와 대책이행으로 아차사고도 절반으로 감소함. 서울시는 2개의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노동조합,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를 참여시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 진행.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점검등 사고조사위원회의 규정을 마련하고, 권고안 이행까지 정기적으로 진행. 시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로 <정시운행 포기>를 선언하고, 지하철의 사고 대응, 정비시간 확보, 안전설비 예산 확보 등을 실질 추진할 수 있었음.
- 노동자, 시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시민의 동의와 지지속에 <정시운행 포기> 와 같은 시민동의를 확보하는 대책이행으로 귀결됨.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화재, 폭발, 누출, 방출 등으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 이에 광주 남영전구 수은중독, 충남 한화토탈 사고등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와 대책이 진행됨.
- 그러나, 대부분의 중대재해 조사에서 노동자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어, 근본원인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도 않고, 조사결과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수용도가 낮아 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음. 사고 발생시 <민간참여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여부> 자체를 갖고 지나친 공방과 소모전이 반복되고 있음.
- 노동자, 시민참여 중대재해 사고조사위원회 상설기구화를 통해 <시민들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 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이행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산재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음. 지자체도 사업주로서 산안법을 위반하거나, 지자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음
- 사업장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감독은 전체 사업장 대비 1%도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산재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지방정부의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 위험감소를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형 산업안전감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역 내 공공, 민간 사업장의 감독을 확대 실시하고, 감독의 내용과 현장 개선조치와 연계되도록 해야 함.
- 지자체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노동자 참여보장제도 필요 (예, 충남.충북.부산.광주.경기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 기존 지자체의 안전지킴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공공현장 감독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음. 그러나, 최근 인천시의 경우 지자체에 산재예방 책무가 부여된 개정 산안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거로 인허가권이 있는 민간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감독도 노동자 시민참여로 진행 한바 있음.

(2) 요구

가. 산재 다발 사업장에 영업정지 실질 이행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영업정지 신속, 적극 이행
- 기업의 법적 소송등 지연 및 불수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나. 노동자 시민참여 중대재해사고조사위원회 상설기구화

- 중대재해 사고조사위원회 상설적 설치운영을 조례 제정등 제도화
- 사고조사에 노동자, 민간전문가, 시민참여 명시
- 사고조사에 대한 사업장과 시의 협조,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점검도 명시하여 사고조사위의 결과가 실질적 재발방지로 연계되도록 함,

다. 지자체별 안전관리 위원회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조례 제, 개정

- 지자체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및 예방사업의 집행 실태 감시 및 참여에 지역 내 노동자, 주민 및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 지자체별 안전관리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및 계획과 집행 실태 공개

라 지자체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확대

- 지자체별로 사업장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집행 체계 및 방안 수립을 지자체의 기본 사업으로 하는 조례 제정
- 자체별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안전감시단 설치
- 안전감시단의 독립성, 불시점검 및 권한 보장
- 안전감시단의 점검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즉각적인 처벌과 시정조치

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만들기

(1) 실태

- 화학물질에 의한 재해는 화재, 폭발, 누출에 의한 화학사고와 배출로 인한 직업성,환경성질환 발생으로 나눌 수 있음.
- 화학사고는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매년 평균 80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물론 지역 주민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
- 올해에도 여수국가산단 이일산업과 여천NCC 폭발사고로 7명 노동자 사망함. 최근 10년간 여수국가산단 화재, 폭발, 누출 등 사고 46건이 발생. 사망자 32명, 부상자 43명임.
-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은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미흡이 40%를 차지하고 있음. 때문에 설비관리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제7조2)은 지자체장에게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계획 수립하고 이행을 위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화학물질에 의한 질환은 최근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 29명 노동자들의 화학물질 급성중독 직업병 발생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세척제 제품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급성 독성 간질환으로 판정받음.
- 또한, 여수국가산단과 포항산단 등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비료공장, 아스콘 공장, 제철산단 발암물질로 배출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집단 암발생으로 배출량 저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2017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2)은 사업주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배출저감 이행 여부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점검 받도록 하고 있음.
- 지자체장은 사업주가 작성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 출입을 통해 배출원을 파악, 배출저감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수 있음.

(2) 요구

① 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노사민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훈련 점검
- 사업장 노후설비 실태조사와 사업장 노후설비개선 이행점검을 위한 검증단 운영
-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집행

② 지자체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와 이행실적 주민 공개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원 파악 및 배출저감 이행여부 점검

■ 보조 발제.

경기도 노동안전보건정책 추진 사례 검토

유 성 규
(공인노무사, 전 경기도 노동정책과장)

본 발제 자료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기도 노동국 2주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2021.6.)」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기도 노동국 경기도의회 업무보고서(2022.2.)」의 내용을 인용 또는 참고해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 경기도 부서별 산재예방사업 추진 및 점검 체계 구축

- ('21년) 산업재해예방 부서별 협의체(16개 부서 및 경기주택공사) 구축
- ('21년) 37개 산재예방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안전사고 점검('20년 166건, '21년 5월 말 51건)
- 대형공사장 소방패트를 점검('20년 1,135개소, '21년 5월 말 400개소)



- 경기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실무 부서를 통한 산재예방사업의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
- 단순 점검 체계가 아닌 컨트롤 타워의 구축, 각 부서별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등이 필요

✓ 노동안전지킴이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6조
- ('20년) 10개 시·군(10명) → ('21년) 31개 시·군(104명) 전역으로 확대
- ('20년) 현장점검 1,998개소, 시정조치 6,874건
- ('21년 4월말 기준) : 현장점검 2,414회, 지적 건수 4,481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의미 있는 정책 사례로 평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 공유 등 제도 개선 필요

✓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대상 권리보장 교육 및 심리치유 지원

- ('20년) 권리보장교육 604시간, 참여인원 2,581명 / 심리치유상담 1,502회, 참여인원 3,946명
- ('21년 5월말 현재) 권리보장교육 16시간, 심리치유상담 96회



- 중앙정부 정책에서 부족한 영역인 감정노동, 스트레스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운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전문인력 확충의 문제, 접근성 제고의 문제, 의료 및 법률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함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21.3.18.)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 ('21년) 노동자 부담분 90% 지원
- ('22년) 노동자, 사업주 부담분 90% 지원



- 배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 및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
-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적용제외신청제도가 개선된 만큼 사업 내용의 변화가 필요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7조
- ('21년) 노동환경개선자금 업체당 5백만원 지원
- ('22년) 평가 점수에 따라 노동환경개선자금 업체별 차등 지원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견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과 변화가 만들어 있도록 충분한 제도적, 기술적, 예산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휴게시설 개선 및 쉼터 마련

- 대학,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등에 대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20년 10개 대학 22개소, '21년 18개 기관 28개소)
-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21년 약 120여개소 예산, '22년 392개소 예산)
- 이동노동자의 동선을 고려한 거점쉼터,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간이쉼터 설치



- 휴게시설 개선의 정책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관련 법률 개정, 이동노동자 쉼터의 이용률 제고와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

✓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 휴가 사용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
-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 제공
- ('21년) 1,700명, 1인당 25만원 지원 사업 예산



- 취약노동자의 휴가권 보장을 노동정책의 영역으로 인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휴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등 지원정책이 함께 설계되어야 함

✓ ('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 경기도청 6,001명 (일반직 4,556명, 공무원 1,205명, 기간제 240명) 대상
- 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마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팀 구성
- 실국별 자체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등)



- 경기도가 스스로를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식하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민간부문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한 점, 기존 산재예방사업 부서의 업무 가중 등 문제는 개선되어야 함

고맙습니다

■ 토론1.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산업연맹 지방선거 요구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 제8회 지방선거 5대요구 25대 세부의제 건설산업연맹 요구 중 안전관련 >

<p>안전한 건설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대재해 사고업체 인·허가 제재 ②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관리 감독 ③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마련 ④ 지역 산업설비 전수조사 및 노후설비 안전대책 수립 ⑤ 시민위협 노후 전신주 전면 교체 ⑥ 지역 건설현장 재해근절 노사전정협의회 구성 및 지역 건설노동자 파상공 예방접종 지원 ⑦ 여성건설노동자에게 맞는 안전장구 지급 ⑧ 소형타워크레인 규격에 맞게 설치
<p>기후위기를 정의롭게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혹서기 작업중단 보장 ② 친환경 소재 건축 입·낙찰 가점 부여 ③ 기후위기로 인한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1. 안전한 건설현장

1) 중대재해 발생업체 인·허가 제재

●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 중대재해를 아래와 같이 규율하고 있음.

-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1월 29일 삼표석산 붕괴로 노동자3명 사망, 2월 8일 요진건설산업 승강기 추락으로 노동자 2명 사망, 2월 11일 여수 여천 NCC폭발로 노동자가 4명 사망 하는등 이외에도 중대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여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케 한 업체에 대해 인·허가 제재

2)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 현장 편의시설 설치 관리감독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현장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 또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 화장실 설치기준' 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 외부에서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

2. 가림벽, 문, 창문은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제작·설치

3. 안전시설(소화기, 접지, 누전차단기 등) 설치

4. 바닥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 사용, 바닥 하수구에 악취 차단장치 설치

5. 설치물·시설물로 인한 노동자 안전이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
6. 화장실과 목욕시설 외부에 개인보호장비(예: 안전모 등) 보관 장소 확보
7. 업장, 휴게실, 대기실, 샤워실, 탈의실과 가까운 곳에 적절히 분산 설치
8. 이동거리는 300m 이내 유지
9. 작업장 위치의 계속 변경 또는 지하에 위치하거나, 노동자 10명 미만 현장은 간이화장실 설치 가능
10. 간선 또는 지선 버스는 회차 지점에서 100m 이내에 확보, 야간에도 이용 조치
 - 장거리 노선(3시간 이상)은 회차지점 외에 중간 운행경로 상에도 확보
 - 중·단거리 노선(3시간 미만)에도 확보 필요
11. 세면대가 내부에 없다면 가까운 곳에 비치, 휴지 등 위생용품 제공
12. 실내조명은 60 ~ 150 Lux, 가급적 환기장치 설치, 자연(창문)환기 시 양방향 환기

- 그러나, 법과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건설현장 편의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편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멀어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불결함.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건설노동자의 질병을 야기시키고 있음.

●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 화장실 설치기준' 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관리감독

3)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건설업 사망자수는 428명이고, 이중 120억 이하 공사현장에서만 317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 수 대비 74%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사망했음. 2020년에는 458명이 사망했고, 이중 120억 이하 공사현장에서 367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수 대비 80%에 해당함. 2021년에는 417명이 사망했고, 이중 120억 이하 공사현장에서 333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수 대비 79.8%에 해당함.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하,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2년을 유예하고 있음.
- 이렇듯, 120억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업 사망자수의 2/3에 해당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함.

●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발주 120억 이하 건설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대책 수립
- 지방자치단체 발주 120억 이하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4) 지역 산업설비 전수조사 및 노후설비 안전대책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 5월 8일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후성 공장과 SK케미칼 공장 폭발사고와 질식사고로 노동자 1명 사망, 6명 부상. 같은 해, 5월 9일 새벽 5시경 포항 포스코제철소 2고로 개보수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 5명 중경상. 13일에는 울주군 온산읍 LS니꼬동제련 울산공장 폭발사고로 8명이 중경상. 2000년 호성케멕스 폭발사고 7명 사망, 2001년 YNCC 수소가스 폭발 1명 사망, 2013년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6명 사망.
- 2019년 5월 17일 대산산업단지 한화토탈에서 스틸렌모노머(SM) 유출 사고로 유증기 흡입 노동자 수백명과 주민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안구 통증 등으로 병원 진료 받음.
- 2020년 3월 4일 롯데케미칼 공장 납사분해센터(NCC) 폭발 사고로 노동자 30여명 중경상, 주민 50여명 부상 재해 발생. 2021년 12월 이일산업 폭발 노동자 3명 사망. 2022년 2월 여수 여천 NCC 폭발 노동자 4명 사망. 이외에도 중대사고와 부상자수는 수십명에 이르고 있으며, 인근 시민들에 대한 피해도 다수임.
- 여수국가산업단지는 40년이 넘었고, 타 지역의 산업단지도 이와 대동소이함. 이렇듯, 산업단지 산업설비 노후화가 급속도로 빨라져 노동자가 예측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구조적, 물리적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설비 확충에 전혀 투자가 되고 있지 않음.
- 이에, 지역 산업설비 내용 년수를 전수조사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해야함.

● 개선방안

- 지역 산업설비 내용 년수 전수조사
- 산업설비 내용 년수(내구연한) 정보 공개 의무화
- 각 지자체별 30년 이상 노후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 단위 종합관리계획을 제정토록 의무화

5) 시민위협 노후 전신주 전면 교체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도심에서 노후화로 인한 전신주 부러짐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2004년 이후 제작된 전신주는 제작년도 등 이력을 알 수 있지만 2004년 이전에 설치된 571만기의 노후 전신주는 제작년월일 및 교체주기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 노후 전신주들의 부러짐 사고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강풍에 의한 천재지변 및 차량의 잦은 충

돌, 무분별한 통신 케이블 영향 때문”이라는 변명만 일관하고 있음. 규정대로 미설치된 전주들과 30년 이상 노후화된 전신주, 과적 전신주들이 즐비하면서 태풍이 부는 계절에는 균형을 잃고 결국은 부러짐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 전신주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노후 전신주 교체를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하도록 하여, 전기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함.

● 개선 방안

- 노후 전신주들을 전수 조사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즉시 교체토록 요구

6) 지역건설현장 산업재해 근절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지역 건설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건설업 종사자 규모가 제조업 종사자 규모보다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규모는 제조업보다 많음.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여전히 전체 사망노동자수의 절반이상인 것은 대한민국 건설현장이 안전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 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하루에 2명이상 사망하고 있음.
- 건설현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지역 공공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선도적으로 나서야함.
-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노동조합, 원청건설업체, 하청건설업체,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건설현장 산재근절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함.
- 건설현장에서는 못 등 철재 자재가 많이 사용되며, 재사용되기도 하여 녹슨 못이나, 철근이 상당히 많음. 건설노동자가 녹슨 못이나 철근에 찔리는 경우가 다반사로 파상풍에 감염됨. 파상풍은 상처 부위에서 증식한 파상풍균이 생산한 신경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임.
- 그래서, 건설노동자는 매년 또는 2~3년 단위로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한번 접종에 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성남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파상풍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이며, 대상자가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은 뒤 성남시에 신청하면 시가 예방접종비(약 5만원)의 90%(1인 1회, 최대

4만5000원)를 지원하는 방식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또는 지역 거주 건설노동자에게 파상풍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사전에 안전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 건설현장 산재근절 노사전정협의회 운영
(최소 분기별 운영/ 건설공사의 원청업체, 하청업체, 노동조합, 지자체 및 안전보건 전문가 등 참여)
- 지역 거주 건설노동자, 지역 건설현장 건설노동자에게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

7) 여성건설노동자에게 맞는 안전장구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에 여성 건설노동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8.4%에서 2021년 7월 현재 10.4%에 달함. 건설현장 특성상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는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임.

[2015년 ~ 2021년 건설업 취업자 현황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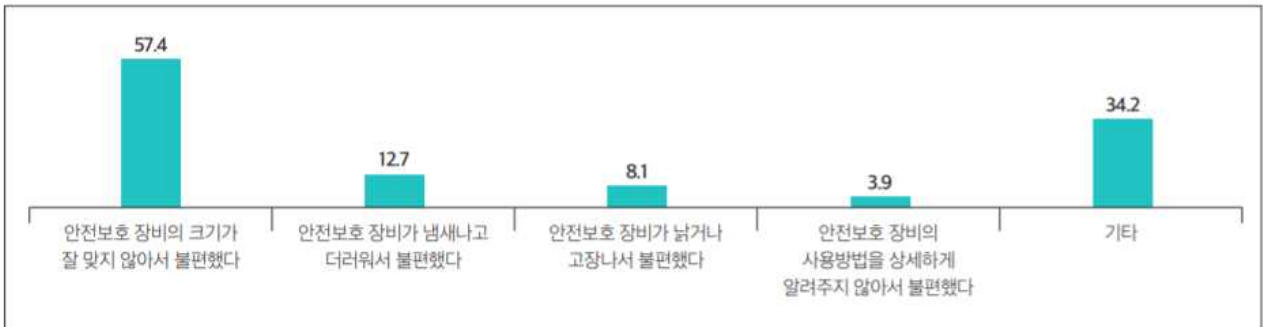
연도	취업자(천명)			구성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15	1,854	1,699	155	100.0	91.6	8.4
2016	1,869	1,718	151	100.0	91.9	8.1
2017	1,988	1,808	180	100.0	90.9	9.1
2018	2,034	1,824	210	100.0	89.7	10.3
2019	2,020	1,817	202	100.0	90.0	10.0
2020	2,016	1,808	208	100.0	89.7	10.3
2021. 07	2,121	1,900	221	100.0	89.6	10.4

※ 출처 : 통계청

- 여성건설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건설현장에서 여성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안전화가 커서 깔창을 몇 겹을 깔고 신어야 하고, 안전벨트는 바느질을 하여 줄여서 사용하고 있으며, 장갑은 여성건설노동자가 직접 사비로 작은 크기의 장갑을 사야 하는 실정임.
-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 건설노동자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56%(284명)가 지급된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작업복 등 안전보호 장비를 사용하면 불편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음.

[2020년 여성 건설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단위 : %)]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렇듯, 건설현장에서 지급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장갑 등의 안전보호 장구는 모두 건장한 남성 사이즈로만 지급되고 있어, 불편함을 물론, 작업과정에서 사고 위험요인이 되어 여성건설 노동자와 왜소한 남성건설노동자는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음.
- 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 업무와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건설사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발생을 이유로 여성건설노동자에게 맞는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건설노동자의 체형에 맞는 다종의 안전장구의 제작과 지급이 필요함.

●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건설노동자의 체형에 맞는 안전장구 지급

8) 소형타워크레인 규격에 맞게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소형타워크레인은 아래와 같은 규격에 따라야 함.

▶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구 분	타워형(T형)	러핑형(L형)							
정격하중	3톤 미만								
지브 최대길이	50m 이하	35m 이하							
지브 최대 모멘트	686kN·m 이하 ※ 지브 최대 모멘트는 지브의 모든 부분에서 최대 모멘트 값 이하여야 하며, 다음 표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80%;"> <tr> <td style="padding: 5px;">지브 최대 모멘트 (kN·m)</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타워크레인 중심부에서 후크의 중심부까지의 수 평거리(m)</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인양 가능한 최대하중 (톤)</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중력 가속도 (9.8m/s²)</td> </tr> </table>		지브 최대 모멘트 (kN·m)	=	타워크레인 중심부에서 후크의 중심부까지의 수 평거리(m)	×	인양 가능한 최대하중 (톤)	×	중력 가속도 (9.8m/s ²)
지브 최대 모멘트 (kN·m)	=	타워크레인 중심부에서 후크의 중심부까지의 수 평거리(m)	×	인양 가능한 최대하중 (톤)	×	중력 가속도 (9.8m/s ²)			
설치 높이	지상 15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되는 타워크레인

구 분	타워형(T형)	러핑형(L형)
정격하중	3톤 미만	
지브최대길이	40m 이하	30m 이하
지브 최대모멘트	588kN·m 이하	
설치 높이	지상 10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 2021년 2월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2020. 6. 30 이전에 등록된 소형타워크레인은 유효기간(21. 6. 30) 내에 새로 정해진 규격에 맞게 조정하거나 일반장비로 전환하도록 하였음.
- 하지만 여전히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에도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이 설치되고 있음. 또한 지자체에서 이에 대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도 함.

● 개선방안

- 지역 관할 내 설치되는 소형타워크레인이 규격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2.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전환

1)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혹서기 작업중단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에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이드’ (2020.06.04)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되면 무더위시간대(14시~17시)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해야함.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하게 되면 무더위 시간대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함.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에 달하면 재난이나 안전 때문이 아니라면 무더위 시간대에 전면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함.
-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혹서기 작업중단 기본수칙은 지켜지고 있지 않음.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1,45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폭염특보 발령시(체감 온도 33도 이상) 1시간 일하면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쉬는 경우는 22.8%밖에 안 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중지를 하는 경우는 없었음.(76.1%).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 온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공공건설공사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폭염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음. 폭염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정부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라도 혹서기 작업중단이 보장되어야 함.

●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하여 혹서기 작업중단 보장

2) 친환경 소재 건축 입·낙찰 가점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 채택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약’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당사국들에게 NDC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마련하여 통보하고 당사국 총회(COP)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 NDC 이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운 NDC를 제출할 때는 기존 NDC보다 후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2021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NDC) 상향안을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를 감축하여 목표연도인 2030년 순 배출량을 436.6백만톤으로 줄이겠다고 의결하였고, 이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회의에서 발표하였음. 또한,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조건에서 건설산업은 상당한 양의 탄소배출을 하는 산업으로서 전 세계 1/3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자원이 건설부문에서 소비되고 있음. 특히, 시멘트는 건설공사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자재임.
- 이에, 국제건설목공노련(BWI)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노동자가 참여하고, 건축 재정 대신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탄소 감축과 탄소세, 부유세, 자본거래세 부과, 공공입찰에서 ILO 기준과 함께 탄소감축을 입찰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고 있음. 또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발주처로서 노동권과 기후변화 대응을 발주조건에 명시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음.

● 개선방안

- 관련법 개정 전 이라도 공공공사 입찰 전 특수계약조건에 탄소감축 조건 명시
- 탈 탄소 건축자재 사용 시 공공입찰 참여 인센티브 적용 등 민간공사 탄소감축 촉진
- 제로에너지 빌딩인증, 저에너지 시공,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탄소감축 방안 마련
- 지역 생활SOC 관련하여 종합적인 탄소감축 방안 마련

3) 기후위기로 인한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심각한 기후위기인 폭한, 폭설, 폭염, 미세먼지로 인하여 대표적인 옥외산업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음.
- 2021년 폭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건설노조에서는 2021년 7월 17일 ~ 20일까지 목수, 철근, 타설 등 토목건축 현장을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음.

<물, 그늘, 휴식 등 편의시설>

○ 지금 일하는 현장에 식수나 제빙기가 가까운 곳에 있나요?

없다 (혹은 너무 멀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97	13.6%
20미터 이내	224	15.4%
50미터 이내	345	23.7%
100미터 이내	367	25.3%
200미터 이내	320	22.0%

○ 쉴 때는 그늘진 곳에서 햇볕이 완전 차단된 곳에서 쉬니까?

햇볕이 완전 차단된 곳에서 쉰다	487	33.5%
아무데서나 쉰다	966	66.5%

○ 온전한 휴게실(냉난방기 설치 등)에서 쉬는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없다	763	52.5%
휴게실이 멀어 가기 힘들	338	23.3%
가끔 휴게실에서 쉰다	293	20.2%
대부분 휴게실에서 쉰다	59	4.1%

○ 작업하는 공간 가까운 곳(100미터 이내)에 간이 그늘막이 설치돼 있습니까?

설치돼 있다	793	54.6%
없다	660	45.4%

○ 쉴 때,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쉴 만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까?

마련돼 있다	137	9.4%
있긴 한데 부족하다	842	57.9%
없다	474	32.6%

○ 폭염기 세면장 상태는 어떤가요?

씻을 수 있을 데가 못 된다	656	45.1%
만족스럽다	415	28.6%
세면장이 없다	382	26.3%

○ 폭염기 세면장은 충분히 설치돼 있나요?

충분히 있다	163	11.2%
절대 부족하다	442	30.4%
부족하다	498	34.3%
모르겠다	99	6.8%
세면장이 없다	251	17.3%

<폭염대책 이행>

○ 폭염 특보 발령시(체감온도 33도 이상) 1시간 일하면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에선 규칙적으로 쉬고 있습니까?

1시간에 10~15분씩 규칙적으로 쉬고 있다	332	22.8%
쉬지 않고 봄, 가을처럼 일한다	293	20.2%
재량껏 쉬고 있다	828	57.0%

○ 휴식시간 보장, 식수 제공, 휴식 장소 제공 등을 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권고사항이 법으로 강화돼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지 받은 적 있습니까?

현장에서 공지 받은 적 있다	453	31.2%
현장에서 공지 받은 적 없다	1,000	68.8%

○ 폭염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

교육 받은 적 있다	648	44.6%
교육 받은 적 없다	805	55.4%

○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되면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되면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사항이 지켜지고 있나요?

폭염으로 작업 단축, 조정, 중단 된 적 있다.	346	23.8%
폭염이어도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	1,107	76.2%

○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한 적 있습니까?

폭염으로 작업 중단 요구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265	18.2%
폭염으로 작업 중단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124	8.5%
모르겠다	1,064	73.2%

- 이와같이 기후위기로 인한 건설현장의 노동조건은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개선방안

- 실효성 있는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보장 강화
- 휴게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 생수와 제빙기에 대한 접근 확대
- 타워크레인 비롯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대책 필요,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노동시간 단축, 작업중지권 보장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 마련

■ 토론2.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 작은사업장 공동휴게실을 중심으로 -

박준도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1. 중소기업 밀집지대, 부유하는 노동시장, 서울디지털산업단지

- 2021년 12월 기준 입주 기업만 12,663개이고 여기에 고용된 인원만 143,522명이 일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서울산단)는 국내 최대의 노동자 밀집 산업단지다. 공단구조고도화의 결과로 제조업과 IT산업의 중소벤처, 스타트업 기업이 매우 활성화된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2011	2019
사업장 규모	1~4인	6.0	7.3
	5~9인	12.5	12.9
	10~29인	28.9	29.4
	30~99인	28.2	21.7
	100~299인	14.4	15.4
	300인 이상	10.0	13.4

<표 39> 서울산단 사업장 규모별 비중 (2011.2019)

- 2011년 3,070명과 2019년 1,037명이 참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산단 노동자의 47.4% ~ 49.6%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 14.3만 명 중 7만여 명이 중소벤처,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2011	2019	2011	2019	2011	2019
근속	0~1년 미만	44.3	41.0	34.7	38.2	53.9	45.9
	1~2년 미만	18.1	18.3	18.7	18.3	17.5	18.4
	2~5년 미만	19.9	23.3	25.0	23.6	14.8	22.2
	5~10년 미만	10.8	10.7	13.6	12.6	8.0	7.0
	10~20년 미만	5.8	5.1	6.7	5.5	4.9	5.0
	20년 이상	1.1	1.7	1.4	1.8	0.9	1.5
서울산단 지진입	0~1년 미만	36.6	38.9	28.6	34.6	41.2	40.9
	1~2년 미만	18.7	17.3	18.2	17.2	17.7	15.3
	2~5년 미만	22.4	23.6	24.7	23.6	20.1	25.2
	5~10년 미만	13.9	13.7	17.5	16.7	11.3	9.6
	10~20년 미만	6.9	5.6	8.8	6.8	7.8	7.4
	20년 이상	1.5	0.9	2.3	1.1	1.8	1.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0> 서울산단 근속년수 비중 (2011.2019)

- 서울산단의 또 다른 특징은 단기근속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2011년, 2019년 모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들이 40%를 웃돌고 있고, 서울산단에서 일한 지 1년이 안 되는 노동자도 35%를 웃돌고 있다. 정규직마저도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35%를 상회하고 있고, 서울산단에서 일한 지 1년이 안 되는 노동자도 30% 전후에 이른다. 서울산단의 노동시장이 8년 넘도록 부유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산단 노동시장이 부유하고 있는 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생존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2020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스타트업 기업 중 고성장 기업의 비중은 6.5%에 불과하고, 그나마 5년 생존률조차도 27.3%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보다 회사가 망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서울산단 정규직 청년의 자조섞인 말에서도 확인되듯 벤처·스타트업의 낮은 생존률이 서울산단 노동시장의 부유성 원인이다.

2. 지역공동휴게실, 지역 산업안전관리자, 지역공동복지기금

- 기업 생존률을 높이려면 단기적 창업지원보다는 기술력 축적과 규모를 키워가기 위한 중장기적 기업육성(스케일업)기조로 기업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 중장기적 기업육성 정책을 펴려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려면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함께 노동조건을 제고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직률을 낮춰야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소·스타

트업 기업들에겐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일정 수준의 복지 정책을 실시할 여력이 적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크지만 주지하다시피 복지격차는 더 심각하다. 『기업체 노동비용조사』를 보면 2013년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의 노동자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문제를 뒤로 한 채 지역노동시장의 안정적 재생산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 「민주노총」을 비롯 노동계는 중소기업에서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지역복지기금’을 요구해왔다. 2016년에는 원하청 상생과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를 위해 복수의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고, 2019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초기업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였고, 원청·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새로운 공동복지모델을 안착시키려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실행 주체들이 있어야하는데 이마저도 요원한 상태다.

- 2022년 8월부터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정부 시행령이 마련되지는 않았는데,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도 적용에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복지 격차는 더 커질 뿐이다. 휴게실 설치 의무화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인데, 정작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제외시킨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가 무색케 될 것이다. 시행령은 가장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휴게실을 제공할 것인지, 법률적 근거를 세우는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처럼 사업장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공동 휴게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용과 관리의 공동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휴게실 설치 의무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다.

- 「민주노총」과 「노동자의 미래」는 전국의 산업단지를 상대로 휴게실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4.22 현재 4,000명이 넘게 응답한 상태고, 서울산단에서만 1,500명 이상이 응답했다. (이 실태조사는 4.27 마감 예정이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응답자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6~7월 경에 세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휴게실도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 바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장의 휴게실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면접조사를 해보니, 서울산단의 경우 사업장의 공간 자체가 적어 휴게공간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설령 휴게공간이 있다 해도 턱없이 비좁은 상태라고 한다. 지식산업센터와 아파트형 공장 내에, 혹은 식당 주변과 공원 주변에 공동휴게실을 설치 해달라

는 요구가 상당히 높다.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은 식사시간 전후로라도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고 있다.

- 여러 사업장이 관리의무와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원청 공동휴게실과 지역 공동휴게실은 중소기업장의 부족한 휴게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즉 누가 선도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대하면서 안착시킬 것인가다. 원청 대기업과 지자체,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

- 서울산단에는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다. 산업단지 중 녹지공간 0%인 곳은 전국에서 서울산단 뿐이다. 공단구조고도화 사업으로 녹지를 조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정수장 부지였는데 이마저도 부동산 개발 용도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넷마블 사옥인 G-TOWER가 들어섰다. 서울시는 400% 용적률 제한을 480%로 완화해주었고, 산단공은 이를 배경으로 넷마블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사회 시민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공간에 공동휴게실, 노동자 쉼터 설치를 공식화해야 한다.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의 분소를 설치해 중소기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내 공동휴게실을 지역사회로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첫 걸음을 떼려면 서울시(/구로구청)와 넷마블, 산단공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서울남부지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관악지청)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좁은 공간, 중소기업장에서의 휴게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동휴게실은 스타트업 회사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원청 대기업과 지역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공동휴게실은 원청·대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는데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장의 ‘산업안전관리자’ 운영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공동휴게실 설치에 서울시와 구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토론3.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원 방안 요구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홍창의

1. 들어가며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강요된 위험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배달노동자들이다.

‘배달비 한 건에 2만 원’, ‘월수입 천만 원’ 등 언론의 왜곡 보도를 통해 배달노동자들은 고소득을 버는 전문직(?) 되었고 너도나도 배달에 뛰어들어 전 국민이 배달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 배달산업이 막 떠오르며 배달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배달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도 없을뿐더러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율도 낮고, 고용보험가입은 올해부터 시작되었을 정도로 사회의 안전망 밖에 있기 때문에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절실하다.

2. 사례로 본 배달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원의 필요성

1) 건강검진지원

- 2020년 10월에 체결한 배달의 민족과의 단체협약에서 건강검진비용을 매년 1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제25조 [건강검진 비용지원]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조합원이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건강검진 비용 10만원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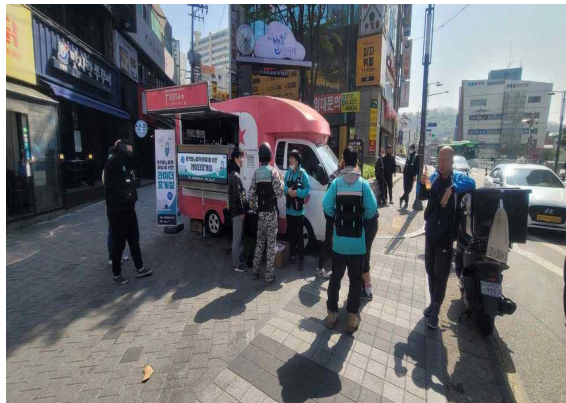
또한, 2021년 공공상생연대기금과 녹색병원에서 추진한 <플랫폼 노동자 건강돌봄사업>을 통해 배달플랫폼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검진을 일부러 챙기기 쉽지 않는데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초기 암 진단, 건강위험진단 등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모든 지자체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건강권의 불평등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한다.

2) 휴게실

① 이동휴게실 사업

- 2020년 부터 시작한 이동휴게실(라이더휴게실)은 커피차(간식차)를 대여해서 배달노동자들이 많이 다니는 거점에 설치하여 커피, 간식, 의자 등을 제공하여 잠시나마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력과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많은 배달노동자들의 평가가 좋았고 이후 좋은 선례가 되어 플랫폼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권익센터 등의 단체들에서도 이동휴게실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이동노동자 쉼터

서울, 경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지만 소수이고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달노동자들의 이용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쉼터에 대한 요구는 높다. 한겨울, 뜨거운 여름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일하기 때문이다. 비가 오는 날 밥을 먹어야 하는데 물이 똑똑 떨어지는 우비를 입고 식당에 들어가다 문전박대 당하거나 눈총을 받았다는 얘기는 비일 비재 하다. 배달플랫폼지부에서는 배민과의 단체협약 체결 이후 사측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상징적으로 마포에 라이더휴게실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쉼터를 개소하였다. 이에 타 지역 조합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현재 2개 지역에서(서울중랑, 경기 부천) 자체로 십시일반하여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지부의 재정이 넉넉치 않아 공과금을 내주는 수준인데 조합원들의 요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 접근성, 편안함이 결국 이용의 관건이다.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쉼터를 많은 곳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3)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배달노동자가 많아졌고, 배달주문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와 비례해서 배달노동자의 운전중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 사고의 유형은 다양하다. 차대차 사고 뿐만 아니라 거리의 보행자와 사고가 날수도 있고 비오는 날 도로가 미끄러워, 공사장의 흙먼지, 모래 때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날 수 있다. 배달노동자는 이륜차보험을 유상운송용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접했듯이 보험료가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을 넘기도 한다. 그럼에도 대인, 대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기도 한다. 보험료가 워낙 비싸서 가정용보험을 가입하고 일을 하는 배달노동자도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 상해보험가입은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에서 작년에 배달노동자에게 2천여명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사례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가 배달업무중 사망, 상해, 후유장애 시 보장받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다. 얼마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 사고로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노동자의 경우 산재전속성 문제로 산재보험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상해보험적용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에게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드렸다.

모든 사고의 책임을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산재보험가입과 상해보험가입은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자체에서 해주기 바란다.

[참고 예]

○ 2021년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 1차 4~5월, 2차 7~8월, 3차 10~11월 신청받음

- 약 2,000여명 배달노동자 지원

- 지원내용

- 1) 산재보험료 부담금 중 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년간 지원
- 2) 분기별 선착순 신청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하는 방식
- 3) 신청자격: 음식/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중 도내 주소지 두고 있는 자, 관내 배달업무 수행하는 자 중 특고노동자

○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16세이상 플랫폼 이륜차이용 배달라이더

- 지원기간 2021.12.31 - 2022.12.12.

- 보장내용

- 1) 교통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보장
- 2)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 최대 2천만원 보장
- 3) 교통사고 수술비(골절에 의한 수술포함) - 3십만원 보장
- 4) 골절발생 진단금 - 2십만원 보장
- 5)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 2백만원 보장

■ 토론4.

할 말 많고, 할 일 많은 지자체 노동안전 문제

주훈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기획실장

1.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지자체 노동자들

[단독]사고 잇따르는 환경미화원...올해 산업재해만 최소 116건

2019년 안전지침 법으로 마련됐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현장점검 어려워
위험 노출된 환경미화원 사고 계속돼

서울신문 - 2021. 12.16

산업재해가 인정된 116건 중 97%인 113건은 추락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사건이었다. 나머지 3건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해 상해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사망 사고가 2건 있었지만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집계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총 852건이었고 이 중 사망 사건만 29건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잘 지켜지는지 현장 점검을 나가려면 최소 6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실태조사에 배정된 예산은 약 1억 8000만원” 뿐

사천시청 비정규직 노동자, 벌목 중 숨져...지자체 중대법 첫 대상

한겨레 - 2022. 4. 8

썩어가 소속된 사천시청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벌목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벌목 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며, 벌목 작업 전에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3.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¹⁾

- 3.3.1. 별목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누락
- 3.3.2. 별목 작업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 3.3.3. 별목 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 미 지정
- 3.3.4. 별목 작업에 대한 별목 작업 시 위험 방지 조치 미 실시.
- 3.3.5. 별목 작업에 대한 별목 신호 방법 부적정

[사실] 소각장 다이옥신, 엄중한 점검이 필요하다

15면 기사보기 | 신문보기 | JPG / PDF | 승인 2022.04.05 22:30 | 댓글 0

뉴스NOW · 기침 3주 이상 지속...코로나19 후유증? 합병 ·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출경특별연합' 설치...

울산시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하고 나섰다. 시 의회의 근로자 안전문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최근 서울에 소재한 2군데 소각장에서 근로자 10명을 조사한 결과, 5명의 혈액에서 '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 다이옥신'이 평균 1.455ppt로 측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의 소각장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의 소각장에서 드러난 다이옥신 검출 수치는 베트남 파견 군인의 측정치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베트남전 당시 밀림을 말려 죽이는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성분과 같은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수조사 계획 없음.
지자체별 전수조사 계획 미진

1)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로 한정함.

2.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당한 이유는?

111개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170곳 16억8천여만원 과태료 폭탄
 이은주 의원 “산안법 시행령 개정 시급 ...가로청소노동자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2018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법 일부를 적용제외 하였음.

고용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노동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지침 내림 지자체 수용 하지 않고, 지켜지지 않아 고발 하게 됨.

구분	지자체명
기소 의견으로 송치	종로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 송파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남동구, 인천광역시, 용진군, 강화군, 철원군, 부천시, 김포시, 수원시, 용인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여주시, 광주시(성남), 양평군, 인제군, 홍천군, 양양군, 고성군(강릉), 부산남구, 부산동구, 부산진구, 부산사하구, 부산서구, 부산연제구, 부산영도구, 부산중구, 부산금정구, 부산기장군, 부산동래구, 부산수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북구, 울산광역시,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울주군, 울산중구, 거제시, 고성군(통영지청), 통영시, 군위군, 대구달성군, 대구달서구, 대구남구, 대구서구, 경북칠곡군, 경북성주군, 문경시, 상주시, 봉화군, 청송군, 의성군, 예천군, 함평군,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김제시,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강진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보성군, 대전대덕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충청북도,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음성군, 제천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은평구, 영등포구,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인천남구, 연수구, 인천동구, 인천중구, 부평구, 인천서구, 계양구, 연천군,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화성시,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시흥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가평군, 양구군, 원주시, 횡성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부산광역시, 부산강서구, 부산사상구, 경상남도,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거창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함양군, 함천군, 대구수성구, 대구동구, 대구중구, 영천시,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대구북구, 경북고령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영양군, 안동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광주동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광주광산구,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제주도, 전주시, 정읍시, 전라북도, 남원시, 익산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대전광역시,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세종시, 계룡시,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단양군, 충주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홍성군

고용노동부는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의 혐의로 170곳의 지자체에 16억8천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되었어도 꼼수 부리는 지자체

■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 **꼼수부리는 지자체**

부산시 군청,구청들이 개정안 조례 내용

부산 시군단위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피해가기 위해 바꾼 조례개정

사례1.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운반 능력을 고려하여 일간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7.10.>

■ **개정법 강제 하기 위한 법개정 발의 한 상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059
----------	------

발의연월일 : 2020. 12. 2.

발 의 자 : 소병철 · 김종민 · 김홍걸
김희재 · 송기현 · 양향자
오영환 · 임호선 · 정찬민
정청래 의원(10인)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중 “안전기준”을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기준”을 “그 밖에 안전기준”으로 한다.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운영할 것
2. 주간작업과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3.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4.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민간위탁 직영전환이 안전문제 해결의 첫걸음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산재사망 직영 대비 12배 많아"

[국감브리핑] 윤준병 "민간업체 정부의 정기적 근로감독 필요"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2020-10-08 09:16 송고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산재 사망사고자 13명 중 12명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환경 개선과 정부의 정기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율 90%

한가지 사례 = 민주당 시의원으로 구성된 전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전주시 민간위탁 직영전환에 대한 주민조례청구 상임위에서 부결 (2022. 4. 19)

정규직전환 정책에서 민간위탁은 지자체 책임으로 넘긴 문재인정부, 민간위탁 직영화를 당론으로 했던 민주당 모두 위선과 거짓이었음.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부분 확대가 입장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의 중요성

지자체는 산업안전 관련 관리책임자,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회(체) 모두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현황,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현황 모두 전수 조사하여 강제 해내야 함.

법제도적 미진한 부분은 지자체가 열린 자세로 보완해야 함.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 필요

6개분야 현업업무종사자만 지정해 놓았음. 행정사무까지 확대 필요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에서 현업업무종사자로 한정 짓지 말고 열어놓아야 함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정 2010.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